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행사·축제성 사업 중심으로

김 근 혜\*

윤 희 정\*\*

## 국문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예산 지출의 정당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 수행 시 재정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들은 전문적 책임성에 건전성과 효율성, 민주적 책임성에 투명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의 제한성, 둘째, 예산편성 과정의 사각지대 존재, 셋째, 기준 재정공시와 실제 행사·축제 예산 간의 괴리, 넷째,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미흡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총액한도제의 내실화, 재정효율성 검토의 사각지대 해소, 실제 행사·축제 경비 공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재정 효과성·효율성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투명성, 행사·축제성 예산

## I. 서론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액의 지출가치성(value for money)이 투입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

\*\* 제1저자

\*\*\* 교신저자

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자체 제도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선심성 예산, 예산 낭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행사·축제 예산의 증가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의 한정성 측면에서는 행사·축제의 지나친 증가는 복지, 교육 등 타 분야의 예산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입된 자원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다면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김권식 외, 2018).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집행을 하는 재정책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행사·축제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단계별로 어떠한 견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정책임성의 구성 요소 및 관련 제도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재정책임성과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재정책임성의 의미

책임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은 행정기관이 외부 기관이나 어떤 행정기준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류춘호, 2003). 또한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행위 또는 비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류춘호, 2012).

재정책임성의 개념은 크게 '정부 간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부 간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받은 이전재원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근석, 2019).

둘째,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예산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운영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근석 외, 2019).

홍근석 외(2018)는 '정부 간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임성일(1999)도 재정책임성을 공공부문 책임성과 지역주민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공공 부문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지역주민 책임성은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재정 부담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배인명(2011)은 전문적 재정 책임성은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논의·분석되었고, 민주적 재정책임성은 투명성과 시민참여 측면에서 논의·분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원·양기용(2014)은 재정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예산회계의 원칙에 따라 자체 재원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 1〉 재정책임성의 구분

구분	정부 간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의 재정책임성
배인명(2011)	- 전문적 책임성·재정건전성: 중장기적인 합리적 자원배분 - 재정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 민주적 책임성·투명성: 재정 정보 완전 공개 - 시민참여: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임성일(2017)	- 건전재정 책임성·재정건전성: 재정적자 및 채무 관리 - 재정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 재정 설명책임성·지방재정 활동의 법령 준수 - 예산의 계획적 집행·예산집행의 성과 달성
이재원(2018)	- 중앙정부를 향한 책임성(upward), 회계책임	- 지역주민을 향한 책임성(downward), 성과책임
홍근석 외(2019)	-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등	- 지방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 등

자료: 홍근석 외(2019) p.174. 재구성.

이 외에도 이상용(2003)은 재정책임성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재정투명성, 주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고, 광채기(2004)도 재정책임성에 대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 및 건전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상용, 2003; 홍근석 외, 2019 재인용).

홍근석 외(2019)는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하고, 전문적 재정책임성은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 운영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은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예산 과정 속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명성, 시민참여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활용하였다(배인명, 2011).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지방채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말하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포함하는 ‘전문적 책임성’과 재정투명성과 실제 시민들의 참여 및 성과를 확인하는 효과성을 포함한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적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으로 행정기관 관점의 행정책임으로 정의하고, 민주적 책임성은 예산집행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시

민들에게 어떠한 성과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효과성과 예산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 수혜자 관점의 행정책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효과성은 행사·축제를 주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는 ‘전문적 책임성’에 가까울 수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만족도와 정책 성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2〉 재정책임성 정의

구분	전문적 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측정 항목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재정투명성과 효과성
예산 과정	정책 기획, 예산편성, 집행	예산편성 후, 집행 후 성과평가, 정보공개
대상	행정기관	시민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는 운영주체, 운영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분하고 운영시기는 사전 예방적 제도, 사후 관리적 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홍근석 외,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재정책임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운영시기 측면에서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만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전 예방적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있다(홍근석 외, 2019).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sup>1)</sup>를 근거로 하여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홍근석 외, 2019). 특히 2015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이 커졌다(우명동, 2018).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형식적 전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1)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한 예산편성보다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거나,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에 의존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조임곤, 2013).

다음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sup>2)</sup>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투자, 중복·과잉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사업 수행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투자심사를 통해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홍근석, 2019). 그러나 투자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심사가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박완규, 2014; 조계근, 2014).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자 지방채 발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수준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2005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홍근석 외, 2019). 그러나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홍근석 외, 2019).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제는 지방채의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이 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임성일, 2011; 조계근, 2014).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비롯하여 예산편성 기준 경비까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단계에서 지방재정활동을 규제·관리하고 있다(우명동, 2018).

부산시도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부산시 자체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1년 이후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사전적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고자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를 운용하고 있다.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는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비, 운영비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시비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도 심사한다.

## 2) 사후관리적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적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이 있다(홍근석 외,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제도’는 1994년 「지방재정법」을 법적기반으로 하고, 1996년 시범실시 후, 1998년에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이 제정되었다(권오철, 2017).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는 「지방재

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법」 제55조<sup>3)</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성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알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지방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하위범주에 속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권오철, 2008) 이 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시각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재원, 2019).

다음으로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1994년 도입되었던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홍근석 외, 2019).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재정 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율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재정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공시 결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환류 메커니즘 또한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임성일, 2011; 조계근, 2014)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이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권오철, 2008).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연도별 결산지표뿐만 아니라 분기별 결산자료, 예산자료 등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재정지표(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관련 재정지표 등)를 활용한다. 많은 재정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홍근석 외, 2019). 그러나 이 제도는 재정운영상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지표의 불완전성과 획일성 등이 지적을 받아왔다(홍근석 외, 2018). 아울러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과 전문성 미흡 문제 등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양지숙, 2014).

3)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Ⅲ.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 1. 선행연구 검토

##### 1) 재정책임성 관련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는 제도, 행위자, 자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수행되어왔다. 염명배(2003)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합 지방재정 분석 시스템 운영,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리티제도 강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시를 강조하였는데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이재원(2012)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부 간 재정관계 구조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세입구조의 재정립,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지향 방향을 중앙이 아닌 지역사회를 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성과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지방재정사업의 결정과정 및 성과정보 공개, 모니터링,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소수자 의견 확인 등을 제시하였다.

임성일(2012)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의 핵심 대상을 예산과정, 세입·세출 관리, 예산회계 운영 시스템, 재정운영 감시와 감사, 재정투명성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양지숙·김민정(2015)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 및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재정운영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획·편성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예산·회계 관리에서는 집행기관과 지출기관의 분리, 회계책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결산·평가단계에서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및 주요사업 정보공개 확대를 제안하였다.

류춘호(2012)는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책임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먼저 예산의 투입(input) 단계에서 관료적 책임성은 예산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할당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둘째, 예산집행과정(process)에서의 법적 책임성은 현장 확인, 감사, 검사, 모니터링과 같은 행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셋째, 예산산출(output)단계에서 정치적 책임성은 예산을 통한 정책·사업의 산출결과가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넷째, 예산결과(outcome)단계에서의 전문가적 책임성은 예산정책·사업이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정책 분석·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 2) 행사축제 관련 선행연구

지역축제를 소재로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그 중에서 축제의 성과를 다룬 선행연구가 많았다(조서형 외, 2019).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축제의 발전방안 혹은 마케팅 및 성공전략을 제시하거나, 서비스 질 또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신광수·황창주, 2009). 이 외에도 기존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주로 단일 혹은 소수 사례연구나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 또는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김권식 외, 2018).

한편 지역축제를 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로는 성과 및 영향력을 본 연구, 지역적 특징과 관련하여 재정적 행태를 본 연구, 지역축제에서 예산의 크기·분배·기능을 본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조서형 외, 2019). 즉, 지역축제를 예산과 관련하여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축제의 예산 지출 배분, 축제 규모에 따른 예산의 크기, 상호적인 예산 결정과정이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축제 예산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등에 대해 연구했다(조서형 외, 2019).

##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행사·축제성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 행사·축제성 사업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배인명(2011), 임성일(2017), 이재원(2018), 홍근석 외(2019)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하고 전문적 책임성은 건전성과 효율성, 민주적 책임성은 투명성과 효과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재정책임성 분석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크게 전문성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성 책임성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기획, 투입, 집행 과정 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은 수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정책에 대한 시민

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과 사업 집행 후 성과와 관련된 효과성으로 구분한다.

즉, 전문적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은 예산정책의 전 범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과정이자 예산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책임성 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바탕으로 ‘행사·축제성 사업의 재정책임성 검토’의 측정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부산시는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의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채무와 관련성이 크나, 행사·축제성 사업의 경우 특성상 지방채 사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설정한 ‘총액한도제’를 재정건전성의 측정 수단으로 제시코자 한다.

둘째, 재정효율성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이자, 사전절차인 재정사업평가, 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재정효율성을 검토하는 예산 사전절차 제도를 적용코자 한다.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는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목표를 위한 재정 투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sup>4)</sup>로 투입 대비 성과의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재정효율성의 측정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재정투명성은 시민들에게 재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재정공시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넷째, 재정효과성은 예산 사업이 집행 후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성과평가를 검토하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행사·축제성 사업의 재정책임성 측정항목

구분		정의	측정 항목
전문적 책임성	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행사축제성사업 총액한도제
	효율성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한 재정효과와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예산편성 사전절차) 재정사업평가,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민주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의적절 하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	재정공시 (행사축제경비, 원가회계 등)
	효과성	수요자 관점에서 행사축제의성과 (시민들의 참여와 만족 등)	행사축제성사업 성과평가

4)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부산광역시(2024).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계획 참고.

## IV. 부산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 검토

### 1. 부산시 행사·축제성 사업 현황

2025년 부산시는 행사·축제성 예산은 461억원으로 전년 대비(228억원) 102% 증액된 규모이다.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165억원), 세계도평방지기구 총회(38억원)등 국제 행사 개최 건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행사·축제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33.3%로 2024년을 제외하고는(2023년 동일) 꾸준히 증액되었고, 2025년에는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예산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행사·축제예산(2021-2025)

(단위: 억원, %)

통계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증감액	증감률	
201-03 행사운영비	36	54	79	61	279	215	352.5	66.8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2	11	13	16	64	51	308.9	52.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6	111	135	150	117	△38	△25.6	5.1
401-04 행사관련시설비	0.8	0.8	0.8	0.7	0.7	-	0.0	△3.3
계	146	176	228	228	461	227	99.6	33.3

주1.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 2022년까지는 301-09, 2023년부터 301-11

2. 본예산 기준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단위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부산광역시(2021-2025) 각 회계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 부산시의 행사·축제경비의 연평균증가율은 5.9%, 코로나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44%였다.<sup>5)</sup>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44.8%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가 2022년과 2023년에 큰 폭으로 증액되어 2023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행사·축제경비 초과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이 0.9% 증가한 것에 비해 행사·축제경비에 투입된 재정규모의 증가폭이 아주 큼을 의미한다.

부산시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2023년도 0.2이나 시·도 행사·축제경비 평균비율<sup>6)</sup>은 0.18로 부산시의 세출 결산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5) 재정공시에서는 ‘행사·축제경비’의 대상 과목을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로 정리하고 있음.

6)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표 5〉 부산시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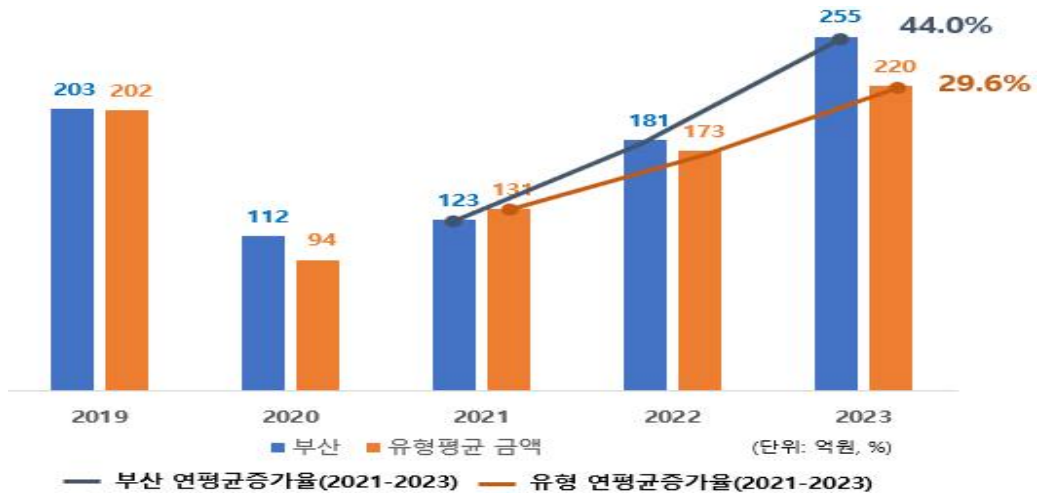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연도별					5년 연평균 증가율 (2019-2023)	3년 연평균 증가율 (2021-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B)	94,450	114,958	122,774	126,472	124,949	7.2	0.9
행사·축제경비(A)	203	112	123	181	255	5.9	44.0
세출 결산 대비 비중(A/B)	0.21	0.10	0.10	0.14	0.20	-	-
17개 시·도 평균비율	0.22	0.08	0.11	0.13	0.18	-	-
증감률	-	△44.8	10.0	47.0	41.0	-	-

자료: 부산광역시(2024). 재정공시(결산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비율) 참고

특·광역시 유형평균 대비 부산시 행사·축제경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재정 수준이 비슷한 유형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부산시의 행사·축제경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행사·축제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유형이 비슷한 지역의 증가율은 29.6%인 반면, 부산시는 44.0%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부산 행사·축제경비와 특·광역시 유형평균 비교



자료: 부산광역시(2024). 재정공시(결산기준) 참고

즉, 부산시는 최근 큰 폭으로 행사·축제경비가 증액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제도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문적 책임성 관련 정책 현황

### 1) 재정건전성: 총액한도제

부산시는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강화계획(2019. 4. 8.)」에 따라 매년 행사·축제성 사업의 한도액을 산정<sup>7)</sup>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국·시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sup>8)</sup>한 순지방비를 재원으로 한다.

2025년 총한도액은 253.06억원으로 전년도 총한도액(249.10억원) 대비 3.96억원 증가하였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sup>9)</sup>하되, 2024년도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2) 재정효율성: 예산편성 사전절차

부산시는 재정효율성 검토를 위해 주요재정사업평가제도와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투자심사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sup>10)</sup> 시행령 제1조의2<sup>11)</sup>를 근거로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여기서 사전심사는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sup>12)</sup>에 근거하여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7) 한도액 산정 = { 2024년도 행사·축제사업 총한도액 ×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

8)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제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9)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실국별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범위 내 자율 편성토록 함.

1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2020. 4. 28.>.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1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

축제·행사(총사업비 30억원 이상)와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내용은 재정현황 대비 사업규모, 자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다음으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sup>13)</sup>을 근거로 실시하되, 대상은 총사업비 범위 내의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이며,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한다.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25. 1. 7.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신·구 대조표)

기존 시행령	개정안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 사업 제외)
〈신 설〉	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 설〉	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신 설〉	자. 법 제37조제1항제2호 <sup>14)</sup>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sup>15)</sup>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심의(분과위원회→전체위원회)하도록 되어 있

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4)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 재정운용의 장기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7〉 행사·축제성 사업 관련 심사 제도

구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법령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영 제1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1, 영 제37~37의7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영 제35조의 5 및 6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영 제41조
규칙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기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지방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목적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신설 억제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 등	◦축제·행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대상	◦(사전심사) 신규 행사성 사업: 사운영비(201-01), 행사실비지원(301-11),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등 ◦(사후평가) 행사성 사업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 ◦공모 유치 신청·응모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30억 이상은 중앙심사
제외	◦지방보조사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국·도(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의무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만 해당)은 평가 제외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
시기 (사전심사)	◦신규 행사성 사업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기 전 ◦매년(격년) 개최하는 반복적 사업: 3년(4년)마다 실시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전 ◦공모사업은 공모선정 후 ◦매년(격년): 3년마다 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액 제외)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증가,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은 재심사
심사 내용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대비 사업규모 분석,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후 소요재원 등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
사후 평가	◦평가결과 예산 반영	◦평가결과 예산 반영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심사 및 평가 주체	◦민간위원회 *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부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자료: 류춘호(2020), 지방정부 행사·축제 예산과 의회통제, 지방의정(2020,12);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참고.

15)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 국비 매칭사업 등 제외 ※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심의는 지방보조금심의에 포함.

한편 부산시에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는 총 3개로 재정계획, 투자심사, 재정공시위원회이다.<sup>16)</sup>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8〉 시·도별 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	위원회		대행위원회명	시도	위원회		대행위원회명
	기능	구성여부			기능	구성여부	
서울	재정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부산	재정계획	○	재정공시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대구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인천	재정계획	○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광주	재정계획	○		대전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울산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세종	재정계획	○	보조금관리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경기	재정계획	○		강원	재정계획	○	강원특별자치도재정 운영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충북	재정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충남	재정계획	○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전북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남	재정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경북	재정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경남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재정공시	●	
제주	재정계획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					
	재정공시	●					

주. ●는 다른 위원회가 기능 대체

자료: 17개 시도 관련 조례(검색일: 2024.10.31.)

1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를 담당.

17개 시·도의 재정계획, 투자심사, 재정공시 위원회의 구성과 대체 여부를 살펴보면,

① 3개의 위원회가 모두 설치·운영되는 곳은 3곳으로 인천, 광주, 경기

② 3개의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2곳으로 강원과 충남

③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나 재정공시 기능을 대신하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재정공시위원회가 투자심사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 단 한 곳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 평가와 투자심사를 모두 심사해야 하나, 현재 부산시는 재정공시위원회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sup>17)</sup>

### 3. 민주적 책임성 관련 정책 현황

#### 1) 재정투명성: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 예산과 결산 기준의 재정공시에서 행사·축제성 예산의 통계목에는 차이가 있다. 예산기준 재정공시는 행사·축제경비인 4개의 통계목<sup>18)</sup>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sup>19)</sup>를 제공하여 행사·축제성 경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으로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공개제도는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에서 말하는 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민화합, 지역 홍보, 기업체·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행사·박람회(엑스포),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하며, 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주민·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최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를 의미한다.

1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8) ① 행사운영비(201-03), ② 행사실비지원(301-11), ③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④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19)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

## 2) 효과성: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sup>20</sup>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sup>21</sup>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sup>22</sup>에 근거하여 매년 행사·축제성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2024년 행사축제성 사업은 2023년 추진한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총 234개 사업(233억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 20건, 미흡이 20건으로 예산 감액 대상 사업이 총 40건이었다.

〈표 9〉 행사축제성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단위: 건,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수	25	17	116	20	20
비율	12.6	8.6	58.6	12.6	10.9

자료: 부산광역시(2024). 2024년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사업 평가 결과 보고.

「2024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평가 계획」에 따르면, 성과평가 ‘미흡’사업은 15%이상 삭감, ‘매우미흡’은 20%이상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예산 반영액 5.8억원으로 2024년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 중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22건(5.8억원)으로 전년 대비(6.8억원) 1억원 정도 감액되었다.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등 지원사업’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및 관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성과평가 결과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이렇듯 성과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며 행사명 변경 시 이전 행사의 성과평가 결과가 미반영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3. 한계점

부산시의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한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총액한도제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강화계획(2019. 4. 8.)」에 따라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① '행사·축제경비' 기준의 4개 통계목(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에 한정되어 있으며, ② 국·시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③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 전국·시도 단위 순회행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사·축제 경비와 총액한도제 적용 예산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행사·축제성 예산 중 일부는 행사·축제경비 통계목 외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 위탁사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총액한도제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5년 부산시 예산안에 따르면, 행사·축제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은 약 51억 원, 공기관 위탁금은 약 9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sup>23)</sup> 이는 각각 건당 평균 5억 원 및 4억 원 규모로, 기존 행사·축제 경비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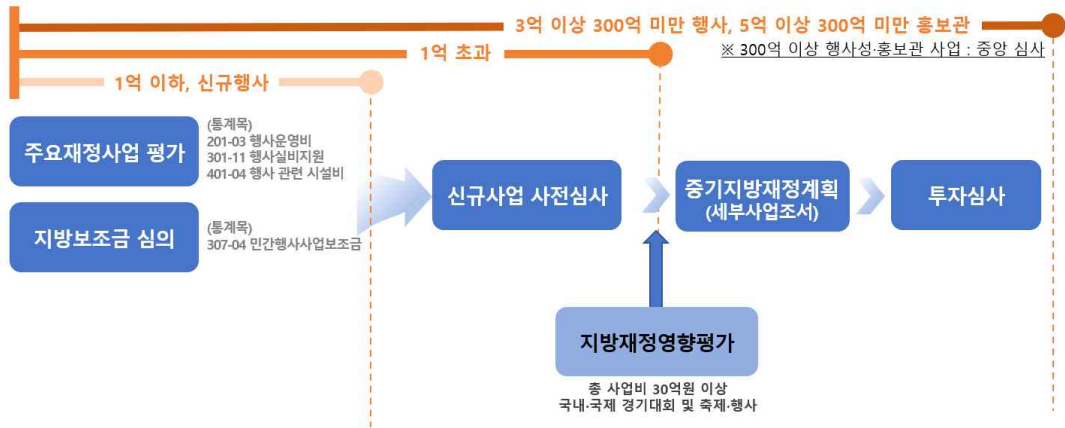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총액한도제는 실제 행사·축제성 사업의 전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 항목에 국한된 제한적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출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부산시는 사업비 성격이나 통계목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 절차가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에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① 1억 이하, 신규사업: 통계목에 따라 주요재정사업평가(201-03, 301-11, 404-04) 또는 지방보조금 심의
- ② 1억 초과인 사업: ① + 신규사업 사전심사
- ③ 3억 이상 300억 미만 행사, 5억 이상 300억 미만 홍보관: ② +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자심사
- ④ 총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②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자심사

23) 2025년도 예산안 기준. ※ 출처: 부산시(2024). 서면질문답변서(2024-400).

〈그림 3〉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그러나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에는 위탁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의회의 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행사·축제 사업은 통계목에 따라 서로 다른 사전절차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전절차의 적용 편차를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보다 간소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역기능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3억 원 미만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위탁 형태로 추진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통제력이 약화되고 예산 운용의 자의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정투명성 측면에서의 한계는 예산 기준 재정공시와 실제 행사·축제성 경비 간의 괴리에서 드러난다. 현재 예산 기준 재정공시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의 네 가지 통계목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결산 기준에서는 원가회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양자 간 차액이 발생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행사·축제 경비와 원가회계 기준 행사·축제 경비 간 차액은 2022년 139.72억 원, 2023년 94.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회계 기준에는 민간위탁금(307-05), 공기관 위탁사업비(308-13),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통계목 외에도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공시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 10〉 행사·축제 경비와 행사·축제 원가회계 경비 비교

(단위: 백만원)

년도	행사·축제 경비(A)	행사·축제 원가회계 경비(B)	B-A
2022	18,075	32,047	13,972
2023	25,493	34,935	9,442

주. 행사·축제 원가회계 경비는 부산시 순부담액인 순원가 기준

자료: 부산광역시(2024). 2023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규모의 정확성은 행사축제경비보다는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행사축제성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원가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1〉 행사축제 경비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행사축제경비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① 행사운영비(201-03) + ② 행사실비지원(301-11) + ③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④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 ① 행사운영비(201-03) + ② 행사실비지원(301-11) + ③ 민간행 사업보조(307-04) + ④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
없음	⑤ 민간위탁금(307-05) + ⑥ 공기관 위탁사업비(308-13) + ⑦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⑧ 자치단체 경장보조 등(308-01)

자료: 류춘호(2020). 지방정부 행사축제 예산과 의회통제. 공공정책, 2020.12, p.83.

마지막으로, 재정효과성 측면에서 성과평가의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일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격년제로 개최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체계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명 변경, 세부 내용 수정 등으로 인해 기존 성과평가 결과가 동일한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단절되거나 개선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소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 기관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행사·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책임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으로 결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V. 개선방안

### 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총액한도제 내실화

현재 부산시가 시행 중인 행사·축제성 사업의 총액한도제는 해당 사업 전체 규모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비만을 대상으로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재정부담의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행사·축제성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목 기준으로 한도액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축제에 사용되는 예산 전반을 총액한도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목의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회가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 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앞서 행사·축제 경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를 사전 보고하는 체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재정보율성 검토의 사각지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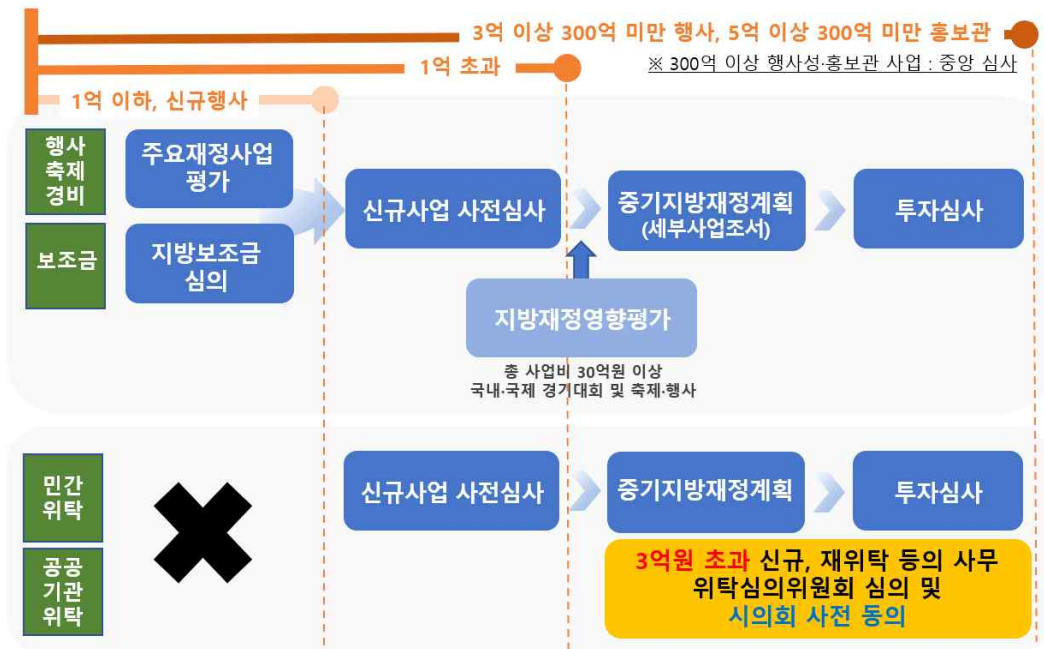
현재 부산시에서는 위탁금 형태의 행사·축제성 예산이 주요재정사업평가 또는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행사·축제 경비 4개 통계목은 1억 이하인 사업과 신규 행사 사업에 대해서도 주요재정사업평가 또는 지방보조금 심의 등의 심사 과정이 있으나, 위탁금 형태의 행사·축제성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업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기에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사·축제 경비(4개 통계목)와 민간위탁·공기관 위탁 사업 간에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구조가 상이하다. 행사·축제 경비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 주요재정사업평가 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다.

이처럼 사업의 운영 형태와 예산 항목에 따라 사전절차가 달라지는 가운데, 민간위탁금 또는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집행되는 1억 원 이하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체로 소규모 포럼,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부재하다.

최근 위탁형 행사·축제 사업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전절차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 행사·축제 경비와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의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산 검토 과정



### 3.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제 행사·축제성 경비 공시

현재 시행 중인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공시는 앞서 'IV. 부산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공시와 결산공시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행사·축제성 예산의 실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출 내용을 반영한 공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시민들에게 예산의 계획과 성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재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4개 통계목)에 한정된 공시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행사·축제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를 포괄하는 형태의 공시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집행되는 예산도 포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4. 재정보과성 및 효율성과 연계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필요: 사업 구체화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세부사업 내에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획의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명확한 세부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실제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며, 특히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중기주요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 사업과 통합하거나 개별 세부사업명 없이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행사성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반드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행사성 사업을 타 사업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개별 사업의 재정계획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행사·축제성 예산은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세부사업으로의 분리를 통해 행사성 사업 예산과 중기재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년 또는 격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 사업명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사명칭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사업명을 병기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5. 행사·축제성 사업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검토

부산시에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는 총 3개로 재정계획, 투자심사, 재정공시위원회인데, 부산시는 재정공시위원회가 투자심사기능을 하고 있다.

2021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시, 부산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 증대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분리하였다.<sup>24)</sup>

현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는 2022년에 비해 심사 대상의 예산 규모는 19.7% 상승하였고, 심사대상 1건당 예산규모는 22.9% 상승하는 등 투자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중요성과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sup>25)</sup>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투자심사와 재정공시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의 심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24) 부산광역시의회(2021).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205). 참고.

가 있다. 하나의 위원회가 다수의 기능을 겸하는 현재 구조는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심사, 재정공시, 재정계획 등 각 기능별로 별도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을 분화하거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 기능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행사·축제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지만, 과도한 예산 지출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행사·축제 경비는 장기적 투자사업이 아닌 단기적·일시적 성격을 띠므로,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규모의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여부, 사전심사 결과의 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액한도제의 적용 범위가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 형태로 집행되는 예산은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절차는 운영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위탁금으로 집행되는 소규모 행사·축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예산 기준 재정공시와 결산 기준 간 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명확한 사업 구조, 위원회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총액한도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통계목 기준을 실질적 예산 흐름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위탁형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행사성 사업은 단일 세부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명 변경 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 전 사업명을 병기하여 기재해야 한다. 넷째, 재정공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이 실제 지출 내역을

25)

[투자심사 수 및 예산규모 추이(2022-2024)]

구분	2022(A)	2023	2024(B)	증감률(B-A)
투자심사건수(건)	114	138	111	△2.6%
예산규모(억원)	20,980	23,786	25,112	19.7%
1건당 예산규모(억원)	184	172	226	22.9%

자료: 부산광역시(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공통); 서면질문답변서(2024-475) 참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재정공시, 재정계획 등 위원회 기능의 분리와 전문화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부산시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 체계 속에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행사의 실효성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만족도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이는 곧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지방행정 실현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방재정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주인의식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더욱 중요한 정책 가치로 자리잡을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공공성이 확보된 정책에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목표에 따라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예산 편성 기획단계에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인식 제고와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견제 기능 강화와 제도적 보완, 지속적인 정책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재기. (2004).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004(3): 33-52.
- 권오철. (2008).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권식·이광훈. (2017). 문화예술 분야 지방재정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원도 지역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8(1): 139-168.
- 김권식·이광훈. (2018). 강원도 지역행사·축제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2018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동균.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법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700: 13-40.
- 김장호. (2017). 재정분권 추진 및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15: 28-34.
- 김준호·김나영·김상현. (202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8(3): 197-215.
- 류춘호. (2003).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부조화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4): 315-337.
- 류춘호. (2012).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류춘호. (2020). 지방정부 행사·축제 예산과 의회통제, 지방의정(2020,12)
- 류현중·김병기.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확보 수단에 관한 소고: 지방 재정준칙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48(2): 233-265.
- 박완규. (2014).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과제. 「지방재정」, 16: 58-75.
- 배인명.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6(1): 57-83.

- 배인명. (2017).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15: 51-60.
- 양지숙. (2014).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분석과 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 양지숙·김민정. (2015).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 염명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재정논집」, 8(2): 33-66.
- 우명동. (2018). 지방재정관리체계 패러다임 개선 필요: 사전적 예방체계에서 사후적 관리 보완체제로의 변경. 「지방재정」, 38: 26-43.
- 이재원. (2012).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 이재원. (2018). 정부 개헌안의 재정분권'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재원. (2019). 「지방재정론」. 윤성사.
- 이창균·하능식. (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 (199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 일반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논집」, 13(2): 91-110.
- 임성일. (2011).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 (2012). 지방재정운영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12(3): 8-33.
- 임성일. (2017).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계근. (2014).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강화와 강원도 대응방향」. 강원발전연구원.
- 조서형·엄태호. (2019). 선택과 환경: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결정 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22(4): 69-98.
- 조임근. (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정책 세미나 발표논문집.
- 홍근석·김성찬. (2018).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 (20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 225-254
- 홍근석·임정빈. (2019).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169-201.
- Ahmad, E., Albino-War, M. and R. Singh. (2006). Sub-national Public Financial Management: Institutions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in Ethisham, A. and G. Brosio (eds), Handbook of Fiscal Federalism.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Hirschman, A. (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owery, D., (1985). The Keynesian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unbalanced budgets: U.S. fiscal policy from Eisenhower to Reaga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429-460.

Williamson, O. E. (2000).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aking Stock, Looking Ahea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 595-613.

부산광역시. (2021-2025) 각 회계연도 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 재정공시(결산기준)

부산광역시. (2024). 2024년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사업 평가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김근혜(金瑾慧):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체계에 관한 연구: AHP 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2016)하고,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재정분석)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정책, 복지행정, 균형발전 등이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정책종결과정의 합리성 검토,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체계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검토 등이 있다.(kimkh0821@korea.kr)

윤희정(尹嬉楨): 부산대학교 관광학 박사과정 수료. 경상남도의회 예산분석팀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팀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연구분야는 문화, 관광분야의 정책연구, 문화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행정구현 등이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자연길 도보관광객의 체험경제요소가 감정적 애착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yhj055@korea.kr)

〈논문접수일: 2025. 4. 3 / 심사개시일: 2025. 4. 11 / 심사완료일: 2025. 5. 19〉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Financial Responsibility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Event and Festival Projec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im, Keunhye

Yoon, Heejung

As fiscal challenges intensify, ensuring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fiscal management systems, public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event and festival budgets persist.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categorizing fiscal accountability into two dimension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oundness, efficiency)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transparency, effectiveness).

Through this framework, four key issues were identified: the limited scope of the expenditure ceiling system, complexity in budget planning, discrepancies between budget disclosures and actual spending, and weak feedback mechanisms in performance evalu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five improvement measures: strengthening the expenditure ceiling system, improving efficiency assessments, disclosing actual event expenditures, linking performance to mid-term fiscal planning, and refining implementation processes.

Key Words: fiscal accountability, fiscal soundness, fiscal efficiency, fiscal transparency, event and festival budgets